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204
----------	------

2025년 12월 1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20일, 최재란 의원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재란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가 이미 폐지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여전히 준용하고 있어 상위 법령 체계와 불일치·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의 일관성과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과의 규정 체계가 상이함.

2. 주요내용

- 가. 여비의 종류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되도록 정비함(안 제2조).
- 나. 여비의 적용 기준을 총칙화하여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및 조문 간 중복 해소를 위해 삭제함(안 제5조 및 제6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최재란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204호로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이미 폐지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여전히 준용하고 있어 상위 법령체계와의 불일치 ·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추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 제2조는 여비의 종류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체계에 맞추어 ‘운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이전비 ·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재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3조는 조의 제명을 「국내여비의 정액」에서 「준용」 규정으로 수정하고, 제5조(여비 정액의 감액)와 제6조(준용)는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는 1975년 제정된 이후 1979년과 1989년 단 2차례 개정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 이미 폐지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등 현행 법령 체계와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1998년 2월, 국내·외 여비 규정을 통합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15680호)이 제정됨에 따라¹⁾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집행을 이에 따라 처리하여 왔으나, 동 조례상의 인용 조항이 정비되지 않아 중복 및 혼선 우려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여비 집행이 이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상위 규정과 일관된 구조로 재정비함으로써 여비 규정 적용에 있어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여비 집행의 법적 근거로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참고로 타 시·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보면, 대다수 교육청이 조례를 존치하되, 여비의 종류·적용 대상 등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세

1) 공무원여비규정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0호, 1998. 2. 24., 제정]

- 제정이유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그 규률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통합하여 단일법령으로 규율하는 한편,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비액 등을 달리 책정함으로써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여비단가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부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조례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되 상위 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합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흐름과 부합합니다.

[표-1] 타 시·도교육청 여비지급 기준 현황

(기준일: 2025.12.8.)

구분	조례명	시행일 (현행)	내용(여비의 지급)
서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1989. 6.26.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비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
부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10.10.27.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대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1999. 1. 1.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15. 4.13.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등
광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07. 6.30.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울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19.12. 1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12. 7. 2.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경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12. 1. 2.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등
충북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4. 5.17.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충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17. 2.28.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4. 1.18.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전남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0. 7. 2.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경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10. 8. 5.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경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3. 8. 3.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등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11.10.12.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과의 불일치 및 조문 중복을 해소하고, 여비 지급체계의 명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 성격의 개정으로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로 한다.</p> <p>제3조(국내여비의 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의 예에 의한다.</p>	<p>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이전비 · 가족 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p> <p>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p>
제4조 삭제	제4조 (현행과 같음)
<p>제5조(여비 정액의 감액) 교육감은 예산의 부족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할 수 있다</p> <p>제6조(준용)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는 국외여비규정을 각 준용한다</p>	<p>〈삭 제〉</p> <p>〈삭 제〉</p>